#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61

발의연월일: 2021. 5. 28.

발 의 자:이만희·김선교·권명호

박덕흠 · 이명수 · 이 용

박형수 · 이양수 · 김희국

엄태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목재생산·공급기지 및 임산물의 소득원 개발로 임업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음.

임업진흥권역은 산지이용구분상 임업용산지로 보전산지에 해당되며, 임업진흥권역이 해제된다 하여도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 지정해제를 위해 임업진흥권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음. 또한, 보전산지 지정해제를 전제로 임업진흥권역을 해제 하였으나, 산지전용 인허가 과정에서 보전산지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 가 많아 임업진흥권역으로의 환원 등 행정절차의 혼선과 민원인 불편 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산지전용 등으로 보전산지가 해제된 경우는 임업진흥권역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산림에 해당되므로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경우 임업진흥권역에서도 해제되도록 하여 행정 간소화와 국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제3호). 법률 제 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업진흥권역 내의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한 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제20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 업진흥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 2. (생략)

혂

3. 임업진흥권역 내의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의한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 5. (생략)

제20조(	임업진	]흥권	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정

아

개

- 1. ~ 2. (현행과 같음)
- 3. 임업진흥권역 내의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산지전용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목 적사업을 완료하고 같은 법 제4 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한 때
- 4. ~ 5.(현행과 같음)